

## 강원도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제정) 2009-03-09 규정 제201호  
(개정) 2010-05-03 규정 제247호  
(개정) 2016-02-04 규정 제383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9-05-30 규정 제518호  
(개정) 2020-08-03 규정 제5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2019.5.30., 2020. 8. 3.>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30., 2020. 8. 3.>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및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6.4.25., 2020. 8. 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타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9.5.30., 개정 2020. 8. 3.>

가. <삭제 2020. 8. 3.>

나. <삭제 2020. 8. 3.>

1) <삭제 2020. 8. 3.>

2) <삭제 2020. 8. 3.>

3) <삭제 2020. 8. 3.>

다. <삭제 2020. 8. 3.>

1) <삭제 2020. 8. 3.>

2) <삭제 2020. 8. 3.>

3) <삭제 2020. 8. 3.>

4) <삭제 2020. 8. 3.>

라. <삭제 2020. 8. 3.>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5.30.>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19.5.30.>

**제3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6급 이상의 소속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20. 8. 3.>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3.>

**제5조(기능)** 위원회는 총장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때 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장이 된다.

③ 회의의 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징계의결요구)** ①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②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9조(심문과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④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0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4., 2019.5.30., 2020. 8. 3.>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제11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징계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제1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등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5.3>

**부칙(2009.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4.)**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3호, 2020.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